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84호 2019. 4. 29.(월)

규 칙

- 목포시 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4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7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19
- 납세자권리현장 고시 ----- 27

공 고

-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 30
-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7
-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2
-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7
-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3
-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8
-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4
-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68

회람							
----	--	--	--	--	--	--	--

목포시 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65호

목포시 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감사규칙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소, 동”을 “사업소, 의회사무국,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u>사업소</u>, 동 2. (생략)	제2조(적용범위) ----- ----- ----- ----- ----- -----. 1. ----- ----- <u>사업소</u>, <u>의회사무국</u>, <u>동 행정복지센터</u> 2. (현행과 같음)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66호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중양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500만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자

제5조의4제1항 중 “시장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장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를 “시장은 시와 시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와, 시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을 “다음 각 호

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9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

(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 “있다.”를 “있고,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로 하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과과 상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1. ~ 5. (생략)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 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 하“특수관계업자”라 한다)가 직무관 련자인 경우 7. <신설> 8. <신설> 9. <신설> 10. <신설>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 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 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1. ~ 5. (현행과 같음) 6.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 제 1항에서 정하는----- ----- ----- 7.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 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 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 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 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 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500만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자 11. (종전 7호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4(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장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4(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은 시와 시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와, 시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신 설>	제5조의5(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 ----- -----다음 각 호의----- ----- ----- -----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 <신 설>	제19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9조의4 <신 설></u>	<u>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u> <u>제19조의4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u> <u>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u> <u>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u>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5 <신 설>	제19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교육) ① ~ ② (생략) ③ <신 설>	제30조(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 ----- ----- -----있고,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u>제32조 <신 설></u>	<u>제3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u> <u>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u> <u>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u> <u>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u> <u>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u> <u>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u> <u>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u> <u>관과 상담하여야 한다.</u>
<u>제3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u> <u>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u> <u>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u> <u>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u> <u>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u> <u>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u> <u>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u> <u>관과 상담하여야 한다.</u>	<u>제33조(현행 제32조와 같음)</u>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의2 서식] <신 설>	[별지 제6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33%;">접수번호</th><th style="width: 33%;">접수일자</th><th style="width: 33%;">처리일자</th></tr> <tr> <td> </td><td> </td><td> </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신고자</td><td style="width: 33%;">성 명</td><td style="width: 33%;">생년월일</td></tr> <tr> <td> </td><td>소 속</td><td>직위(직급)</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요구자</td><td style="width: 33%;">성명</td><td style="width: 33%;">직위(직급)</td></tr> <tr> <td> </td><td>소속</td><td> </td></tr> </table>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67호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공모사업)주민공모사업 (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은 조 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u>500만원</u>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주민공모사업)----- ----- ----- ----- ----- <u>1,000만원</u> ----- -----.

목포시 고시 제2019-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주택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소공원(131호))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1. 사 업 명 :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 사업주체
 - 성 명 :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송용도 외 1인
 -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16, 광명샤인빌 101동 1403호
3. 사업승인 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50 외 95필지
 - 규 모 : 연면적 149,072.813㎡, 지하1/지상16층~22층, 1,186세대
 - 공급유형 :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
4.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 2019. 1. 23.
5. 착공예정일자 : 2017. 11. 10.
6. 준공예정일자 : 2020. 5. 31.

7.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기간	2017. 09. 30. ~ 2020. 05. 31.	2017. 11. 10. ~ 2020. 05. 31.
면적	건축면적 10,350.839m ² 연 면 적 148,545.222m ²	건축면적 10,581.023m ² 연 면 적 149,072.813m ²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19.09% / 용적률 213.87%	건폐율 19.51% / 용적률 215.15%

8. 기 타

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주택법」 제19조에 의거 다른 법률 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9.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붙임1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붙임2

[붙임1]

목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석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목포시 석현동 850번지 일원	71,220	감)380	70,84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1	목포시 석현동 850번지 일원	70,840	• 미매입 필지 제척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축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1,220	감)380	70,840	100.0	
주	거 지 역	71,220	감)380	70,840	100.0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2,119	감)380	11,739	16.6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59,101	-	59,101	83.4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석현동 850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	380	22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척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69	15~17	집산 도로	740 (445)	대1-9 석현동 1000전	대1-1 석현동 940-2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2010-89호 (2010.4.5)	
기정	소로	1	124	10	국지 도로	442 (152)	대1-1 석현동 502-1답	소2-208 석현동 833-1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3.30)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10	소1-124 석현동 777-2답	영산초등 학교계 석현동 894-4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6.5)	
기정	소로	2	208	8~10	국지 도로	637 (278)	중1-26 석현동 816-67대	대1-9 석현동 969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3.30)	
기정	소로	2	610	8	국지 도로	135	소2-22 석현동 892대	중2-69 석현동 900-2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2010-89호 (2010.4.5)	

주 : ()는 지구 내 연장임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3	공원	소공원	석현동 893전 일원	4,595	감)380	4,215	목포고시 제2017-138호 (2017.7.21.)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3	소공원	• 면적 감소 - 면적 : 4,595m ² →4,215m ² (감 380m ²)	• 사업시행을 위하여 미매입 필지 제척에 따른 소공원 구역 축소

(3)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3	수도공급설비 (광역상수도)	석현동 940-2전	석현동 866-5수	중로 2-69호선	0.445	1,598	목포고시 제2018-148호 (2018.10.12.)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1	A-1	54,229	목포시 석현동 850번지 일원	54,229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목포시 석현동 850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제13호 부대시설, 제14호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높 이		• 22층 이하	
		배 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향 배치	
		형 태		• 지붕 :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심미성 증진을 위하여 조형적 형태의 지붕 권장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투시형 담장 및 조경 담장 계획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계획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승인내용을 준수
- 차량의 진·출입은 결정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허용

3.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변경 구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신설	-	4,215.0	-	-	건폐율 : 0.00%
시설소계	신설	-	837.2	-	-	시설율 : 19.86%
도로/광장	신설	도로 및 광장	720.4	-	-	
휴양시설	신설	팔각정자 외 1종	-	-	-	
운동시설	신설	체력단련장 외 1종	116.8	-	-	
관리시설	신설	문화재안내관 외 1종	-	-	-	
그밖의시설	신설	지석묘 외 1종	-	-	-	
녹 지	신설	-	3,542.6	-	-	녹지율 : 80.14%

나. 시설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수량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신설	합	계	-	4,215.0	-	-	31개소	
	신설	시 설 소 계		-	837.2	-	-	31개소	
도로 및 광장	신설	소 계		-	720.4	-	-		
	신설	-	도 로	전 지 역	562.2	-	-		6개 노선
	신설	가	광 장	전 지 역	158.2	-	-		
	신설	가-1	광장-1	788-11대	68.9	-	-		
	신설	가-2	광장-2	892대	89.3	-	-		
휴양 시설	신설	소 계		-	-	-	-	17개소	
	신설	①	팔각정자	녹지 내	-	-	-	1개소	
	신설	②	벤 치	전지역	-	-	-	16개소	
운동 시설	신설	소 계		-	116.8	-	-	6개소	
	신설	나	체력단련장	890-3전	116.8	-	-		
	신설	③	체력단련시설	체력단련장 내	-	-	-	6개소	
관리 시설	신설	소 계		-	-	-	-	3개소	
	신설	④	문화재안내판	녹지 내	-	-	-	1개소	
	신설	⑤	종합안내판	녹지 내	-	-	-	2개소	
그밖의 시설	신설	소 계		-	-	-	-	5개소	
	신설	⑥	지석묘	녹지 내	-	-	-	4개소	
	신설	⑦	석관묘	녹지 내	-	-	-	1개소	
녹 지	신설	-	녹 지	전 지 역	3,377.8	-	-		

다.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신설	합	계			-	562.2	-	-	-	-
신설	소 로	소 계			-	562.2	-	-	-	-
신설	소로	3류	1	2.0	119.1	240.8	진입로	남동측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신설			2	2.0	47.1	98.7	시설연결로	광장-2	소로3-1	
신설			3	1.5	30.4	49.3	시설연결로	소로3-1	체력단련장	
신설			4	1.5	43.6	70.5	시설연결로	소로3-1	소로3-6	
신설			5	1.5	17.7	30.6	시설연결로	소로3-2	소로3-4	
신설			6	1.5	48.2	72.3	시설연결로	광장-2	광장-2	

[붙임2]

목포 도시계획시설(소공원(123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구분 항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석현동 893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 업 명 : 123호 소공원 조성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소공원 조성 : 4,215.0㎡ - 공원시설 : 도로 및 광장, 휴게쉼터, 체력단련장, 조경식재 등 - 매장문화재 이전복원 : 지석묘 4기, 석관묘 1기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40번길 1, 3층(옥암동) ○ 성 명 :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조합장 : 송용도)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19.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0. 5.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붙임참조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재 생략(도시계획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완료)	○ 열람기간 : 2019. 1. 24. ~ 2019. 2. 7.(14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의견없음
9.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 - 270 - 8414(목포시청 도시계획과) 061 - 270 - 8467(목포시청 건축행정과)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5,194	4,215					
1	석현	788-4	대	300	300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2	석현	788-5	전	508	150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3	석현	788-7	도	25	10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4	석현	788-9	전	330	320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5	석현	788-11	대	332	332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6	석현	788-14	도	6	6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7	석현	788-15	도	42	42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8	석현	890-1	전	807	701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9	석현	890-3	전	212	212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10	석현	891	대	393	202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11	석현	892	대	502	204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12	석현	893	전	1,574	1,574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13	석현	894-11	임	63	63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14	석현	894-16	학	100	99	목포석현지역 주택조합	전남 목포시 평화로 140번길 1, 3층(옥암동)			

목포시 고시 제2019-93호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 고시

-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고시방법 : 시보,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기획예산과 (☎270-82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납세자권리헌장

2.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낭독용) 끝.

붙임 1**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붙임 2**납세자권리현장 요지 [낭독용]**

□ 세무조사에 앞서 법령에 따라 제공된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신고내용은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귀하는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를 받지 않으며 조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귀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비밀로 보호 받으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 공고 제2019-551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서식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신청 및 지원 (안 제2조)

나. 표지판 부착 (안 제3조)

3. 관계법령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제7조

4. 관련부서 의견

가. 규제대상 : 해당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예산 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6. 입법예고 : 2019. 4. 29 ~ 5. 20(21일간)

7.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참조: 건축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기한: 2019. 4. 29 ~ 5. 20(21일간)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처: 목포시 건축행정과

- 1) 주소: (우)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목포시청)
- 2) 전화: (061)270-8050, 팩스: (061)270-8050

붙임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안)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확인) ①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및 제91조의3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자가 내진성능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발급된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표지판 부착)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기본사항	건축물명		건축주	
	위치			
	용도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지상1층 바닥면적	m ²
	지상1층고	m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구조형식		사용승인일	년 월 일
	내진성능 확인자			

내진보강 관련사항	주요공법			
	시공기간	~		
	시공사		대표자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내진성능 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내진성능 확인서

1.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2) 건축물의 용도:
3) 건축물의 위치:	4) 건축물의 구조형식:
5)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6) 연 면 적: m ²	7) 준공년도: 경과연수 년
8) 지진구역: 중요도(내진등급)*:	9) 지반종류*:
10) 기초형식:	11) 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2.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해당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사용승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첨부서류: 가. 2017. 2. 4. 이후 사용승인 된 내진설계기준 적용 시설물: 사용승인서
나. 그 외 시설물: 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또는 구조계산서 등 1부
나)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명서류 1부

3.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내진성능평가 내용: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시설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 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X방향 =		X방향 =		X방향 =	
Y방향 =		Y방향 =		Y방향 =	

2)* 내진성능평가 결과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첨부서류: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명서류 1부

4. 내진보강을 완료하였을 경우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해당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내진보강완료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완료보고서 등 1부

나. 내진성능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명서류 1부

*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시설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붕괴방지, 인명안전, 즉시거주

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자 격:

성 명: (인 또는 서명)

목 포 시 장 귀하

■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

건축물 현황	명 칭		건축주	
	위 치			
	용 도		구조형식	
	규 모			
	준공년도		경과년수	
내진성능 평가	지진구역		지반종류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내진설계 (보강) 완료	지진구역		지반종류	
	내진성능 수준		주요공법	
	내진보강 시기		내진보강 시공사	
내진성능 확인자				
관리번호				

위 건축물은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따라 내진설계를 완료한 시설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 120g/㎡)

■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



비고

1. 글씨체: 휴먼모음 T

2. 컬러



C:100 M:98 Y:55 K:11

3. 재질: 알루미늄 판

4. 규격: 26cm × 13cm

210mm × 297mm [백상지 80g/㎡]

목포시 공고 제2019-576호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 입법 예고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또한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 불합리한 용어 정리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지원액 조정(제4조 제1항)
 - 신생아 1명당 장애 1~2급은 100만원, 장애3~4급은 70만원, 장애5~6급은 50만원 지급에서 신생아 1명당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 지원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 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 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예산사항 : 별도 예산 조치 필요없음

9. 입법예고 : 2019. 4. 29. ~ 5. 20.(21일간)

10.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1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20(월)까지 목포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815), 직접방문 등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61-270-8815, FAX 270-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액)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u>장애1~2급은 100만원, 장애3~4급은 70만원, 장애5~6급은 5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u>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액) ① ----- ----- ----- <u>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u> 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또는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목포시 공고 제2019-577호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 예고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또한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 불합리한 용어 정리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의 운영위탁 가능 조정(제6조)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 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별도 예산 조치 필요없음

8. 입법예고 : 2019. 4. 29. ~ 5. 20.(21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20(월)까지 목포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815),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61-270-8815, FAX 270-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정신지체 장애인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 장애인은 사전에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 ----- ----- -----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정신지체 장애인은----- -----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또는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목포시 공고 제2019-578호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또한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 불합리한 용어 정리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리비용 지원절차 서식 수정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6.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7. 예산상황 : 별도 예산 조치 필요없음

8. 입법예고 : 2019. 4. 29. ~ 2019. 5. 20.(21일간)

9.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20(월)까지 목포시장(노인장애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우편번호 58613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2),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61-270-8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의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중 장애종류, 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명			장 애 정 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연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주 소			전 화 번 호		
	장애명			장 애 정 도		
수 급 유 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 애 인 보 장 구 수 리 내 역

업체명 :

기간 : ~

[illegible]

목포시 공고 제2019-579호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3차에 한하여 연임으로 확대하여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위원 임기 조정(제4조 제1항)
 - 현 행 : 1차에 한하여 연임
 - 개 정 : 3차에 한하여 연임
 - 위촉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을 3차에 한하여 연임으로 확대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19. 4. 29. ~ 5. 20.(21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20(월)까지 목포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2),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61-270-8814, FAX 270-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①당연 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차에</u> <u>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① ---- ----- ----- -----, <u>3차에</u> <u>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또는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목포시 공고 제2019-580호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조문 개정에 따른 「목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인용법령 해당 조문 수정 및 심의사항 조문 신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상위법령 개정 조문에 따른 인용법령 해당 조문 수정
- 상위법령 개정 추가된 심의사항 신설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8. 예산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9. 4. 29. ~ 2019. 5. 20. (22일 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0일까지 목포시장(민원봉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061-270-3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제25조제2항”을“제25조”로,“제74조제4항”을“제74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법 제11조”를“법 제10조”로, 같은 조 제2호 중“법 제12조”를 “법 제11조”로, 같은 조 제3호 중“법 제16조”를“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영 제22조제2항”을“영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4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4조제5항 에 ----- ----- ----- -----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 -----.
1.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1.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 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5. 영 제22조제2항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6. 영 제23조제2항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붙임 2**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7호]**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誤記)의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9-584호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관내 아파트 신축에 의한 통반 신설과 누락된 신주소 지번의 등재로 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정 대상 지역 및 조정 사유

대상 지역	조정 사유
연산동	-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통반 신설 및 조정
삼학동	- 통반 증감없이 누락된 신주소 지번 등재
하당동	-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통반 신설 및 조정 - 오탁자 정정

○ 조정 현황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조정사유
	통	반	통	반	통	반	
시전체	599	2,593	601	2,601	증 2	증 8	
연산동	18	85	19	89	증 1	증 4	- 19통1반~4반(통반증가) : 목포용해2지구 모아엘가에듀파크 신축(264세대)
삼학동	15	64	15	64	-	-	- 4통1반 : 자유로 87(산정동, 근화삼학베아채) 등재
하당동	22	87	23	91	증 1	증 4	- 23통1반~4반(통반증가) : 리송센트럴카운티 3차아파트 신축(361세대) - 22통 오탁자정정 : 빌리앙트·빌리아트 → 빌리앙뜨

3. 규칙 개정안 : 별첨

4. 입법예고

○ 기 간 : 2019. 4. 29(월) ~ 5. 20(월)(21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0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0580), 직접방문 등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산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연산동	19	1	연산백련로1번길 69 (목포용해2지구모아엘가에듀파크, 101동, 102동)
		2	연산백련로1번길 69 (목포용해2지구모아엘가에듀파크, 103동, 104동)
		3	연산백련로1번길 69 (목포용해2지구모아엘가에듀파크, 105동, 106동)
		4	연산백련로1번길 69 (목포용해2지구모아엘가에듀파크, 107동, 상가동)

별표 삼학동 4통 1반 관할구역란 중 ‘자유로 87(산정동, 근화삼학베아채)’를 등재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삼학동	4	1	동명로76번길 29 동명로76번길 37 (산정동, 동아원앙아파트) 동명로76번길 38 (산정동, 제오그린빌) 동명로76번길 40 (산정동, 삼양그린빌) 둥근섬로 80 용당로77번길 17, 23, 25 자유로 87(산정동, 근화삼학베아채)

별표 하당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22	1	옥암로 174(빌리앙뜨아파트101동)
		2	" 174(빌리앙뜨아파트102동)
		3	" 174(빌리앙뜨아파트103동)
		4	" 174(빌리앙뜨아파트104동)
		5	" 174(빌리앙뜨아파트105동)
	23	1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1동)
		2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2동, 상가동)
		3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3동)
		4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5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연산동			신설	19	1	연산백련로1번길 69 (목포용해2지구 모아엘가에듀파크, 101동, 102동)
					2	연산백련로1번길 69 (목포용해2지구 모아엘가에듀파크, 103동, 104동)
					3	연산백련로1번길 69 (목포용해2지구 모아엘가에듀파크, 105동, 106동)
					4	연산백련로1번길 69 (목포용해2지구 모아엘가에듀파크, 107동, 상가동)
삼학동	4	1	동명로76번길 29 동명로76번길 37 (산정동, 동아원앙아파트) 동명로76번길 38 (산정동, 제오그린빌) 동명로76번길 40 (산정동, 삼양그린빌) 동근섬로 80 용당로77번길 17, 23, 25	4	1	동명로76번길 29 동명로76번길 37 (산정동, 동아원앙아파트) 동명로76번길 38 (산정동, 제오그린빌) 동명로76번길 40 (산정동, 삼양그린빌) 동근섬로 80 용당로77번길 17, 23, 25 자유로 87(산정동, 근화삼학베아채)
하당동	22	1	옥암로 174(빌리앙트아파트101동)	22	1	옥암로 174(빌리앙트아파트101동)
		2	" 174(빌리아트아파트102동)		2	" 174(빌리앙트아파트102동)
		3	" 174(빌리아트아파트103동)		3	" 174(빌리앙트아파트103동)
		4	" 174(빌리아트아파트104동)		4	" 174(빌리앙트아파트104동)
		5	" 174(빌리아트아파트105동)		5	" 174(빌리앙트아파트105동)
			신설	23	1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1동)
					2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2동, 상가동)
					3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3동)
					4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5동)

목포시 공고 제2019-594호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2. 제정이유

-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령 및 지침에 분산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경제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 제정 필요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 조례제정 목적, 용어 정의, 기본원칙
- 안 제4조~제6조 : 시장책무, 사회적경제조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7조~제12조 :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기능·위원회·운영 규정,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록 등
- 안 제13조~제15조 : 사회적경제활성화 계획수립, 기업발굴, 지원센터 설치·기능·위탁

- 안 제16조~제19조 :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민간기업 참여, 홍보
- 부칙(조례 폐지) :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안 제2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 기한 : 2019년 5월 20일까지
-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의견 제출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제출처 :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
 - 주 소 :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 전 화 번 호 : 061-270-8789
 - 팩 스 : 061-270-8791
 - 직 접 방 문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 (270-8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업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전라남도가 지정한“예비사회기업”

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 공공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활동가
3. 윤리적 소비자 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1명
5. 시 공무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 훈련·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 특화 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 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활성화 지원) 시장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간 및 민간네트워크의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지원,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경영등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홍보 지원
7.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8.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③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1항의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시장은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 사회와 연대, 지역 사회 공헌 활동, 공동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우선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목포시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목포시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 기업 지원 확대

제19조(홍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